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20. 12. 3. 접수 제22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54571호로 D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일반자금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6. ‘C은 원고에게 4,078,795원 및 그 중 2,174,924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6. 8.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은 2020. 11. 27.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22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고흥군청, 순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54571호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동생인 C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C이 E 주식회사 외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재산상태 및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고흥군

임야 2133㎡

